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4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8까지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서)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맹견수입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증은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③ 영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4호의5서식과 같다.

제12조의4(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게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이수 또는 훈련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의 내용은 맹견의 적절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와 사고방지 등에 필요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포함하며, 제1항에 따른 훈련의 내용은 해당 맹견의 특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체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2. 영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맹견 관련 교육 또는 훈련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5(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만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
마개를 할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
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할 것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
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
간

② 맹견의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
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
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제12조의6(맹견 위해방지 조치 등)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도
지사는 맹견에 의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외벽 등 맹견의 탈출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경고문 등 표시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맹견에 의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

제12조의7(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2조의8(맹견 소유자의 교육)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기적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초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경우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2. 그 외의 경우: 제1호의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1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3시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2. 영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4.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록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유지·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기질평가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 등) 영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4를 준용한다.

제13조의3(기질평가비용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며, 그 밖에 구체적인 기준, 지급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
2. 기질평가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3. 기타 기질평가에 필요한 비용

제13조의4(기질평가 조사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의5(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5항 및 영 제14조의5에 따른 위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의 과목, 방법 및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3조의6(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자격시험 제도 운영을 위한 자격검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7(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위탁기관은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4호의7서식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자격증을 교부하기 전에 자격증 교부 대상자가 법 제3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합격자에게 사실 증빙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자료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및 법 제3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자격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의8(검정수수료 등의 징수) 영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검정수수료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 및 보수교육 경비는 위탁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3조의9(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5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물 인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27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까지”를 “제5호까지”로 한다.

5.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경우로서 해당 소유자의 맹견사육을 위한 여건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다만, 법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맹견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의2 및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하거나 검역본부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 중에서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한다.

②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대해서는 법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에서 승인받아 국제기구 또는 내·외국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현장 실험
2. 질병방역 또는 공중보건상 시급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동물실험

제36조의2(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대상 동물의 범위) 법 제59조제1항

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소, 돼지, 닭, 오리,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6조의3(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인증 갱신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한다)의 경영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

월 전까지 인증 갱신 절차 및 갱신 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의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36조의5(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인증심사를 하여야 하고, 별표 9의2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

2.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

② 제1항의 인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의3과 같다.

④ 그 밖에 인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6(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⑤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의5를 준용한다.

제36조의7(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검역본부장은 영 제23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법인이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일

②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심사(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5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갱신 심사 및 재심사
3. 법 제65조에 따른 인증취소
4. 법 제66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5. 그 밖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검역본부장이 요청하는 업무

③ 검역본부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인증심사원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30시간 이상의 교육
2. 정기교육 : 인증심사원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1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4시간 이상의 교육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법령
3.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 업무, 인증심사원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8(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9의4와 같다.

제36조의9(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농장의 표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9의5와 같다.

제36조의10(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절차)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차량”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도축장”이란 검역본부장이 별표 9의6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운송차량(이하 “동물복지 운송차량”이라 한다) 및 도축장(이하 “동물복지 도축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허가증 사본
2.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동물복지 도축장 운영현황서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심사를 해야 하고, 신청이 별표 9의6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10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심사를 해야 하고, 변경내용이 별표 9의6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동물복지 운송차량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11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사본
2.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동물복지 운송차량 운영현황서

⑦ 검역본부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심사를 해야 하고, 신청이 별표 9의6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의12서식의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동물복지 운송차량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13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⑨ 검역본부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 이내에 변경심사를 해야 하고, 신청이 별표 9의6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의12서식의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의11(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9의7과 같다.

제36조의12(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7서식과 같다.

제36조의13(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과 유사한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1. “동물복지”라는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2. “Animal Welfare”라는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② 그 밖에 동물복지축산물과 유사한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1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승계신고)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8호의14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승계받은 농장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1부
3.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1부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인력”을 “종사자 등 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업대상, 영업 세부방안, 영업장소,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계획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6.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그 밖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 요청한 서류

-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때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맹견취급허가 등) ① 영 제23조의3에 따른 맹견취급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3호의2서식과 같다.

- ②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맹견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 ③ 시·도지사는 영 제23조의3에 따른 신청이 별표 10의2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맹견취급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맹견취급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맹견취급허가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맹견취급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맹견취급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3호의6서식과 같다. 그 밖에 맹견취급변경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 ⑥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

다.

1. 법 제70조제3항제1호 및 제4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2. 법 제70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한 다음 달 말일까지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는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제1항”을 “①법 제7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인력”을 “종사자 등 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업대상, 영업 세부방안, 영업장소,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계획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5.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확인”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3시간”을 각각 “3시간(다만,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의 경우 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추가교육:”을 “추가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2조”를 “법 제82조”로 한다.

5. 맹견의 안전관리, 사고방지에 관한 사항(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영업자에 한한다)

제53조 중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다음 각 호의 증표 및 서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장 폐쇄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2. 조치기간, 조치범위 및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

별표 2의2, 별표 3의2 및 별표 9의2부터 별표 9의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영 별표 3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1)바)(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개”를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를 사육·관리하며 개”로 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영 별표 3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관리해야 한

다.

별표 11 제2호라목1)가) 중 “일반형”을 “유형별 세부기준의 일반형”으로 하고, 같은 1) 나) 중 “경형”을 “규모별 세부기준의 경형”으로, “화물자동차로서,”를 “화물자동차로서, 유형별 세부 기준의”로 한다.

별표 12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업증”을 “영업·광고 등을”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과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5)가) 부터 자)까지 외의 부분 중 “계약서를 제공할”을 “계약서 및 증명 서류 제공”으로, “판매하는”을 “판매·광고 등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5) 가) 중 “등록번호, 업소명”을 “허가번호, 상호”로 하며, 같은 5) 마)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5) 자)를 삭제하며, 같은 8) 중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을 “경우 다음 사항을”로 한다.

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촬영하거나 녹화·기록한 정보를 촬영 또는 녹화·기록한 날부터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동물운송업자는 3일간 보관해야 한다.

파. 「동물보호법」에 따라 작성·보관하는 문서를 허위·거짓으로 작성·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하.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매월 거래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보고해야 한다.

거.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영업·광고 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너.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된 경우 해당 시설과 구분되도록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출입구를 차단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더. 종사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영업장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러.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 중 맹견취급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맹견이 영업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업장 밖으로 탈출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맹견을 번식, 수입, 양도·양수한 경우나 보유하고 있는 맹견이 죽은 경우에는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영업장 반경 500m 내 주민 등을 대상으로 맹견을 취급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4) 영업장의 외벽은 어린이 등이 손을 집어넣어 맹견과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영업장은 콘크리트 등 맹견이 땅을 파고 탈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맹견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책임보험, 중성화 등의 요건

을 갖추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해야 하며, 기질평가를 거치지 않은 맹견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질평가 비용·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10) 영업장에서 번식 목적의 개를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경우 그 개들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직접 대면하여 판매·전달해야 한다.

마) 판매 동물에 대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진단서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증명서 별표 12 같은 9)다) 중 “한다”를 “하고, 그 검진 내역을 해당 수의사의 날인을 받아 1년간 보관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9) 마) 중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 및 별지 제36호서식”으로, “제출받아야 기재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출받은”을 “제출받아, 제출받은 허가증이 사실과 같고”로, “판매기록이 기재된”을 “판매기록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을 확인한”으로 하고, 같은 9)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라.8) 중 “영업등록증”을 “영업 허가증”으로 하고, 마.7) 중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를 “항시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별로 적정량의 물, 사료 및”으로 한다.

가) 허가번호,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대면 판매, 계약서 및 증명 서류 제공 의무

라) 판매 동물의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

나) 판매업자가 사용할 계약서

자)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의 법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별표 12 마.7) 중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를 “제공하여야”로 하고, 바.2) 중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를 “항시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별로 적정량의 물, 사료 및”으로,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를 “제공하여야”로 하며, 바.4) 중 “소유주”를 “소유자”로 하고, 바.6)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제공”을 “제공하고 그 사본을 1년간 보관”으로 하며, 아.6) 중 “소유주 등”을 “소유자 등”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맹견취급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1만원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갱신

가. 수수료는 신청비와 출장비를 포함하며,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현장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 출장비는 반환해야 한다.

나. 신청비: 1건당 10만원

다.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라.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비용은 인증신청인이 납부해야 한다.

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제13조의8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뒷면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대표소유자)

* 단독소유의 경우이거나 소유자 중 1인만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인은 1인만 기재하면 되며, 공동소유자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비고 칸에 대표소유자 여부 명기

※ 현재 거주지가 주소와 다를 경우 현재 거주지 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동물관리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성명	직위	전화번호	관리장소(주소)
------------------------	----	----	------	----------

동물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	성별		중성화		출생일	특이사항
				암	수	여	부		

--	--	--	--	--	--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만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공동등록의 경우: 신청인 외 공동소유자의 동의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호서식 뒤쪽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뒤쪽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뒤쪽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뒤쪽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3. 동물을 공동 등록하는 경우, 대표소유자는 반드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동물을 공동 등록하는 경우 대표소유자 외 공동소유자에게도 「동물보호법」 상 등록 동물에 대한 관리·교육 등에 대한 준수 의무가 발생하며 미이행 시 벌칙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법인명):”을 “(법인명): 000(대표소유자), 000

(공동소유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4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특징”을 “나이/체중”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18호의1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업종	<input type="checkbox"/> 동물장묘업 - 장례식장: 설치 / 미설치 - 동물화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건조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수분해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봉안시설: 설치 /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동물생산업 <input type="checkbox"/> 동물수입업 <input type="checkbox"/> 동물판매업(일반, 알선·중개, 경매 알선·중개)	* 다수 영업의 허가 신청 시 각각의 영업 허가 신청서 작성 필요

취급동물의 종류	[]개, []고양이, []그 밖의 동물()	인력 현황(종사자 수)	명
----------	-----------------------------	--------------	---

동물생산업 신청자 작성 항목

생산동물의 종류	[]개, []고양이, []그 밖의 동물()	품종별 사육 마릿수	품종명	마릿수		
				암컷	수컷	총합

<input type="checkbox"/> 소규모 동물생산업 여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가목1)바)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합니다.					
		* 사육 품종별로 모두 작성			

맹견 사육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참고) 맹견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	---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23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업종	<input type="checkbox"/> 동물전시업 <input type="checkbox"/> 동물위탁관리업
------	--

	[]동물미용업(일반, 알선·중개, 경매 알선·중개) []동물운송업 * 다수 영업의 허가 신청 시 각각의 영업 허가 신청서 작성 필요
--	---

동물전시업 신청자 작성 항목

인력 현황 (종사자 수)	명	품종명	마릿수		
			암컷	수컷	총합
전시동물의 종류	[]개 []고양이 []그 밖의 동물()	품종별 전시 마릿수			
			* 사육 품종별로 모두 작성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동물보호법」 제76조”를 “「동물보호법」 제7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중 “(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합니다)”를 “(휴업·폐업의 경우만 해당하며, 동물장묘업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로 하며, 같은 뒤쪽 제1호 중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을 “기간”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를 “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후단 개정규정, 별표 12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 및 별표 12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7 관련)

1. 격리조치 기준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기준에 따라 생포하여 격리해야 한다.

- 1) 격리조치를 할 때에는 그물 또는 포획틀을 사용하는 등 마취를 하지 않고 격리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
- 2) 1)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흥분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사람을 공격하거나 군중 속으로 도망치는 등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여한 바람총(Blow Gun)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맹견을 마취시켜 생포할 것. 이 경우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엉덩이, 허벅지 등 근육이 많은 부위에 마취약을 발사해야 한다.

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보건소장 등 관계 공무원, 동물보호센터의 장, 법 제88조 및 제90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에게 가목에 따른 생포 및 격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센터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보호조치 및 반환 기준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생포하여 격리한 맹견에 대하여 치료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나. 보호조치 장소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도 조례나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맹견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맹견의 소유자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유자등에게 격리 및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호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맹견을 소유자등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보호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보호해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실과 그 사유를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별표 3의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안정 보장 및 복지 증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32조제2항제1호	자격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법 제32조제2항제2호	자격취소		
다.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3호	자격취소		
라.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4호	자격취소		
마.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5호	자격취소		
바.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6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취소

[별표 9의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6조의4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관리자"란 동물을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축산농장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농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나. "자유방목"이란 축사 외 실외에 방목장을 갖추고 방목장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 기준

가. 사육시설 및 환경

-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이어야 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 전체를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2) 농장 내에서 동물복지 사육 방법과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
- 3)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려는 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나. 관리자의 의무

- 1) 관리자는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법과 규정 및 먹이 공급, 급수, 환기, 보온, 질병 등 관리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2) 관리자는 동물의 생리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사양관리로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항상 인도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취급하고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3) 관리자는 검역본부장이 주관하거나 지정하여 고시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한 동물복지 규정과 사양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원격 교육도 포함한다)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해당 농장에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이 있을 경우 교육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 4) 관리자는 검역본부장 또는 인증심사원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사육 및 관리

- 1) 다른 농장에서 동물을 들여오려는 경우 해당 동물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이어야 한다. 다만, 동물의 특성, 사육기간, 사육방법 등

을 고려하여 가축의 종류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을 들여올 수 있다.

- 2) 농장 내 동물이 전체적으로 활기가 있고 털에 윤기가 나며, 걸음걸이가 활발하며,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에 활력이 있어야 한다.
- 3)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 치료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동물은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난 후에 해당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다.
- 4) 가축에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투여(사료나 마시는 물에 첨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해서는 안 된다.
- 5)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농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용법, 용량,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입 및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6)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서 검출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가축의 종류별 개별기준

가축의 종류별 인증 기준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의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36조의5제3항 관련)

1.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장”으로 한다)은 제36조의5에 따라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서류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장은 ‘서류 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현장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3.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의 농장을 방문하여 동물의 관리방법, 사육 시설 및 환경, 동물의 상태 점검 등 동물복지 축산농장 평가기준에 따라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8호의15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인증평가 관련 자료 및 사진 등과 함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인증기관장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받은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만일,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다.
6.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인증심사원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자문위원은 인증신청인과 관련된 자료와 심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6조의8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3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축산 농장을 인증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4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5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별표 9의5]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기준 및 방법(제36조의9 관련)

1.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임을 농장에 표시하려는 자는 아래의 형식에 맞추어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비고

1. 간판의 크기: 가로 60cm, 세로 40cm
2. 글자 및 심별의 크기
 - 가. 농장명: 세로 10cm(청색)
 - 나. 인증번호 제 호: 세로 5cm(청색)
 - 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심별 원: 반지름 15cm(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란색, 산 모양은 녹색, 울타리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동물복지축산농장 글자는 흰색)
 - 라. 농림축산식품부 심별 및 글자: 세로 10cm
3. 바탕색: 흰색
4. 심별의 반침 반 타원: 회색
5. 간판 및 글자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나, 간판의 내용 및 심별의 형태와 색깔은 위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별표 9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6. 농장표시와 함께 별표 9의7의 인증표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별표 9의6]

동물복지 운송차량 및 도축장 지정기준(제36조의10 관련)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도축장”이라 함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도살 처리하는 축산물위생 관리법 상의 작업장으로 소, 돼지, 닭, 오리 등 축종별로 구분된다.
- 나. “차상대기”라 함은 동물이 운송되어 도축장에 도착하였을 때 계류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동물을 하차하지 않고 차량 적재함 내에서 대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가변식 하차대”라 함은 동물을 하차 시 하차대를 운송차량의 적재함 높이에 맞추어 유압식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하차대를 말하고 “고정식 하차대”라 함은 가변식 하차대와 같은 설비 없이 고정된 바닥으로 된 하차대를 말한다.
- 라. “전살”이라 함은 동물의 뇌와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어 기절시키는 것을 말한다.
- 마.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이란 동물의 도축에서 축산물의 가공까지 일련의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를 말한다.
- 바. “가림막”이라 함은 동물운송차량의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를 덮는 구조물 또는 동물 이동 시 통로의 난간 측면부를 덮는 구조물을 말한다.
- 사. “현수”이라 함은 소, 돼지, 닭이 쇠클에 채워져 거꾸로 매달리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 아. “DOA(Dead On Arrival)”란 도축장에 도착 시 이미 사망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복지 도축장 또는 운송차량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동물도축세부규정」 및 「동물운송 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축종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도축장

1) 소

구분	구비요건
기본사항	(1) 동물복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담당자는 도축장 내 동물복지 관련 사항을 점검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계류시간, 계류두수, 중량 - 도축설비 점검사항 - CCTV모니터링 결과(문제점확인 및 교정내용) - 운송차량 방문실적(운송자, 차량번호, 축종, 출발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송두수) - 인증농가 출하 시 지정차량으로 운송 여부 - 동물복지 자체교육(일시, 사진, 참석자서명, 교육내용 등)

구 분	구 비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 위반 시 조치사항 ② 최근 3개월간 운영현황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2) 도축장대표 또는 동물복지 담당자는 매년 2시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복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물복지 담당자는 매월 1회 이상 동물취급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축장 내에서 동물학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CCTV 설치위치는 동물학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차대 : 동물의 자연스런 하차의 확인이 가능한 곳 - 계류장 : 충분한 계류면적 제공 여부를 확인 가능한 곳 - 계류장에서 기절시설로 들어가는 통로 : 동물의 자연스런 이동의 확인이 가능한 곳 - 방혈대 : 동물이 의식이 상실된 상태에서 방혈 실시 여부가 확인 가능한 곳 ② 모든 CCTV 영상은 하나 이상의 모니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선명한 화면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의 CCTV 녹화 기록은 최소 30일 이상 분량을 보관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서 동물을 다음과 같이 학대하여서는 안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몰이도구, 몽둥이 및 폭력 사용행위 ② 작업장에서 발로 차거나, 던지거나, 동물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행위 ③ 의도적으로 동물의 민감한 부위(눈, 귀, 코, 항문, 생식기 등)를 뽀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행위 ④ 꼬리를 꺾는 행위 ⑤ 보행이 어려운 동물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모터가 달린 기구를 사용하여 끄는 행위
하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의 하차 전 차상대기 중 동물이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동물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유도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하차유도시설 : 차광시설과 조명시설 ② 차광시설은 적재함 외부 직사광선을 최소한으로 차단하고 조명시설은 하차대를 밝게 비추어 동물이 걸어가는 방향이 밝도록 조정해야 한다. (3) 하차 시 동물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하차 시 하차대 각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하차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변식 하차대를 설치한 경우 실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고정식 하차대를 설치한 경우 바닥을 높여서 차량에 따른 하차대 높이를

구 분	구 비 요 건
	<p>다양화하고 하차대 높이에 맞는 적절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한다.</p> <p>(5) 동물의 하차 시 하차대 각도는 26° 이하여야 한다.</p> <p>(6) 하차대 바닥면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마찰력이 있는 재질로 되어있어야 한다.</p> <p>(7) 하차 후 동물이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변을 가리는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p> <p>(8) 하차대에서 추락한 동물이 계류시설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경사유도로가 구비되어있어야 한다.</p> <p>(9) 하차 후 생체검사대에서 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 도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계류	<p>(1) 계류장은 동물이 눈·비·바람 및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실내형 구조물이어야 한다.</p> <p>(2) 계류사 내 급수기는 동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작동되어야 한다.</p> <p>(3) 동물의 체온조절을 위한 분무·샤워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p> <p>(4) 유해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p> <p>① 계류장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이하여야 한다.</p> <p>(5)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 또는 공격성이 있는 동물을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이 운용되어야 한다.</p> <p>(6) 계류 중인 동물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적합한 조도(31~50Lux)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생체검사나 이동 시 일시적 조도를 올려 사용할 수 있다.</p> <p>(7) 계류장은 도축처리율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롭게 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계류장의 계류밀도는 마리당 4.99㎡ 이상이어야 한다.</p> <p>(8) 이동통로에 동물의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p> <p>① 진로 방해 요소 : 이동통로 내 반사물질(물), 통로를 가로지르는 배수로, 이동통로 내 동일하지 않은 재질의 벽면, 금속이나 천 등이 펠럭이는 것, 사람이 동물 앞을 가로막는 것, 그림자 등</p> <p>(9) 계류장 칸막이가 설치되어 인접 칸의 동물과 서로 볼 수 없도록 차단되어야 한다.</p> <p>(10) 계류시간은 기절을 실시하는 동물의 하차에서 기절까지 경과시간을 말하며 적정 계류시간 기준은 3~10h이다.</p>
기절	<p>(1)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고 있으며 수시 점검되어야 한다.</p> <p>(2) 소에 충격법을 실시하는 경우 적절한 기절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① 충격부위 : 눈의 바깥쪽 부위와 반대방향의 뿔 사이의 교차점을 수직</p>

구 분	구 비 요 건
	<p>방향으로 충격</p> <p>(3) 기절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의식을 회복한 개체를 방혈하여서는 안된다.</p> <p>① 의식회복 판별법 : 눈 깜빡임, 각막 또는 눈꺼풀 반응, 리듬감 있는 호흡, 귀, 꼬리 및 다리의 이완, 발작, 소리지름</p> <p>② 다리떨기는 기절로 인정한다.</p> <p>(4) 최초 기절 실패 시 재기절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① 동물복지 담당자는 휴대용 전살기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축산물 가공	(1)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의 경우 동물복지 축산물과 일반 축산물의 혼합을 방지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2) 돼지

구 분	구 비 요 건
기본사항	<p>(1) 동물복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① 담당자는 도축장 내 동물복지 관련사항을 점검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류시간, 계류두수, 중량 - 도축설비 점검사항 - CCTV모니터링 결과(문제점확인 및 교정내용) - 운송차량 방문실적(운송자, 차량번호, 축종, 출발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송두수) - 인증농가 출하 시 지정차량으로 운송 여부 - 동물복지 자체교육(일시, 사진, 참석자서명, 교육내용 등) - 동물복지 위반 시 조치사항 <p>② 최근 3개월간 운영현황실적을 제출해야 한다.</p> <p>(2) 도축장대표 또는 동물복지 담당자는 매년 2시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복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① 동물복지 담당자는 매월 1회 이상 동물취급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3) 도축장 내에서 동물학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① CCTV 설치위치는 동물학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차대 : 동물의 자연스런 하차의 확인이 가능한 곳 - 계류장 : 충분한 계류면적 제공 여부를 확인 가능한 곳 - 계류장에서 기절시설로 들어가는 통로 : 동물의 자연스런 이동의 확인이 가능한 곳 - 방혈대 : 동물이 의식이 상실된 상태에서 방혈 실시 여부가 확인 가능한 곳 <p>② 모든 CCTV 영상은 하나 이상의 모니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선명한 화면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p>

구 분	구 비 요 건
	<p>③ 작업장의 CCTV 녹화 기록은 최소 30일 이상 분량을 보관하여야 한다.</p> <p>(4) 작업장 내에서 동물을 다음과 같이 학대하여서는 안 된다.</p> <p>①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물이도구, 몽둥이 및 폭력 사용행위 또는 의도적으로 동물을 다른 동물 위로 몰아넣는 행위</p> <p>② 작업장에서 발로 차거나, 던지거나, 동물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행위</p> <p>③ 의도적으로 동물의 민감한 부위(눈, 귀, 코, 항문, 생식기 등)를 뽀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행위</p> <p>④ 보행이 어려운 동물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모터가 달린 기구를 사용하여 끄는 행위</p>
하차	<p>(1) 동물의 하차 전 차상대기 중 동물이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p> <p>(2) 동물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유도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p> <p>① 하차유도시설 : 차광시설과 조명시설</p> <p>② 차광시설은 적재함 외부 직사광선을 최소한으로 차단하고 조명시설은 하차대를 밝게 비추어 동물이 걸어가는 방향이 밝도록 조정해야 한다.</p> <p>(3) 하차 시 동물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p> <p>(4) 하차 시 하차대 각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하차대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① 가변식 하차대를 설치한 경우 실제 운용하여야 한다.</p> <p>② 고정식 하차대를 설치한 경우 바닥을 높여서 차량에 따른 하차대 높이를 다양화하고 하차대 높이에 맞는 적절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한다.</p> <p>(5) 동물의 하차 시 하차대 각도는 20° 이하여야 한다.</p> <p>(6) 하차대 바닥면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마찰력이 있는 재질로 되어있어야 한다.</p> <p>(7) 하차 후 동물이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변을 가리는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p> <p>(8) 하차대에서 추락한 동물이 계류시설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경사유도도가 구비되어있어야 한다.</p> <p>(9) 하차 후 생체검사대에서 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 도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계류	<p>(1) 계류장은 동물이 눈·비·바람 및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실내형 구조물이어야 한다.</p> <p>(2) 계류사 내 급수기는 동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작동되어야 한다.</p> <p>(3) 동물의 체온조절을 위한 분무·샤워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p> <p>(4) 유해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p> <p>① 계류장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이하여야 한다.</p>

구 분	구 비 요 건
	<p>(5)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 또는 공격성이 있는 동물을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이 운용되어야 한다.</p> <p>(6) 계류 중인 동물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적합한 조도(31~50Lux)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생체검사나 이동 시 일시적 조도를 올려 사용할 수 있다.</p> <p>(7) 계류장은 도축처리율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롭게 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계류장의 계류밀도는 마리당 0.83m² 이상이어야 한다.</p> <p>(8) 이동통로에 동물의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p> <p>① 진로 방해 요소 : 이동통로 내 반사물질(물), 통로를 가로지르는 배수로, 이동통로 내 동일하지 않은 재질의 벽면, 금속이나 천 등이 필러이는 것, 사람이 동물 앞을 가로막는 것, 그림자 등</p> <p>(9) 계류장 칸막이가 설치되어 인접 칸의 동물과 서로 볼 수 없도록 차단되어야 한다.</p> <p>(10) 계류시간은 기절을 실시하는 동물의 하차에서 기절까지 경과시간을 말하며, 적정 계류시간 기준은 3~10h이다.</p>
기절	<p>(1)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고 있으며 매일 점검되어야 한다.</p> <p>(2) 돼지를 전살하는 경우 전살방법은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① 전류 : 최소 1.25A 이상</p> <p>② 통전시간 : 2~4초</p> <p>③ 통전부위 : 너부위 또는 너와 가슴부위</p> <p>(3) 돼지를 CO₂ 가스 기절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① 권장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챔버 내 적정공간 확보 - 농도 : 80~90% - 노출시간은 모든 돼지가 기절상태가 되도록 충분해야 하고 최대시간은 180초 이하 <p>(4) 기절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의식을 회복한 개체를 방혈하여서는 안 된다.</p> <p>① 의식회복 판별법 : 각막 또는 눈꺼풀 반응, 리듬감 있는 호흡, 귀, 꼬리 및 다리의 이완, 발작, 소리지름</p> <p>② 다리떨기는 기절로 인정한다.</p> <p>(5) 최초 기절 실패 시 재기절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① 동물복지 담당자는 휴대용 전살기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구 분	구 비 요 건
방혈	<p>(1) 돼지를 전살법으로 기절한 경우 방혈은 20초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p> <p>(2) 돼지를 CO2 가스법으로 기절한 경우 방혈은 60초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p> <p>(3) 돼지의 방혈 시작 후 반드시 무의식 상태를 확인한 후 최소 30초 이후에 탕박·박피 등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p> <p>① 의식회복 판별법 : 눈 깜빡임, 각막 또는 눈꺼풀 반응, 리듬감 있는 호흡, 귀, 꼬리 및 다리의 이완, 발작, 소리지름</p> <p>② 다리떨기는 기절로 인정한다.</p>
축산물 가공	<p>(1)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의 경우 동물복지 축산물과 일반 축산물의 혼합을 방지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p>

3) 닭

구 분	구 비 요 건
기본사항	<p>(1) 동물복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① 담당자는 도축장 내 동물복지 관련 사항을 점검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류시간, 계류두수, 중량 - 도축설비 점검사항 - CCTV모니터링 결과(문제점 확인 및 교정내용) - 운송차량 방문실적(운송자, 차량번호, 축종, 출발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송두수) - 인증농가 출하 시 지정차량으로 운송 여부 - 동물복지 자체교육(일시, 사진, 참석자 서명, 교육내용 등) - 동물복지 위반 시 조치사항 <p>② 최근 3개월간의 운영현황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p> <p>(2) 도축장대표 또는 동물복지 담당자는 매년 2시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복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① 동물복지 담당자는 매월 1회 이상 동물취급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3) 도축장 내에서 동물학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① CCTV 설치위치는 동물학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차대 : 하차 시 낙하 등에 의한 부상여부 확인이 가능한 곳 - 현수장소 : 동물을 쇠클을 이용하여 거꾸로 매다는 곳 - 기절장소 : 전기수조, 가스실 부근 - 방혈대 : 동물이 의식이 상실된 상태에서 방혈 실시 여부가 확인 가능한

구 분	구 비 요 건
	<p>곳</p> <p>② 모든 CCTV 영상은 하나 이상의 모니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선명한 화면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p> <p>③ 작업장의 CCTV 녹화 기록은 최소 30일 이상 분량을 보관하여야 한다.</p> <p>(4) 작업장 내에서 동물을 다음과 같이 학대하여서는 안 된다.</p> <p>①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물리도구, 몽둥이 및 폭력 사용행위</p> <p>② 작업장에서 발로 차거나, 던지거나, 동물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행위</p> <p>③ 닭이 들어있는 상자를 던지거나 발로 차는 행위</p> <p>④ 의식이 있는 닭을 상자에서 꺼낼 때 날개나 목, 한쪽 다리를 잡아 꺼내는 행위</p>
포획	<p>(1) 포획작업자는 상차작업 전 도축장 동물복지 담당자로부터 다음 내용이 포함된 동물취급자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① 포획 시 상태가 좋지 않은 닭은 상차하지 말아야 한다.</p> <p>② 포획 시 목, 날개 죽지를 잡아서 이동하여서는 안 된다.</p> <p>③ 생체중량이 1.5kg이상인 닭은 한손에 5마리 이상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p> <p>(2) 수송용기의 적재 밀도는 57kg/m³ 이다.</p>
계류·투입 시설	<p>(1) 계류장은 동물이 눈·비·바람 및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실내형 구조물이어야 한다.</p> <p>(2) 닭의 체온조절을 위한 분무·송풍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p> <p>(3) 동절기에는 닭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난방장치를 운영해야 한다.</p> <p>(4) 계류시간은 기준에 적합하게 지켜져야 한다.</p> <p>① 계류시간은 기절을 실시하는 동물의 하차에서 기절까지 경과시간을 말한다.</p> <p>② 적정 계류시간 기준은 4시간 이내이다.</p> <p>(5) 유해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p> <p>① 계류장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이하여야 한다.</p> <p>(6) 닭을 투입시킬 때 낙하로 인한 골절이나 상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낙하높이 최소화 등 주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7) DOAs 수를 기록관리 한다.</p> <p>① 작업장 DOAs 비율이 0.5% 이상 발생 시 원인조사, 개선책 마련 시행,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p> <p>② DOAs 수거장소에는 인도적 처리 등을 실시한 사망한 개체만을 보관한다.</p>
기 전 절 살 현 수 방 법	<p>(1) 쇠클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양다리가 매달려 있어야 한다.</p> <p>(2) 현수작업장에서 전기수조까지 이동로는 닭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낮은 조도의 조명을 사용하거나 푸른색의 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p>

구 분	구 비 요 건
법	<p>(3) 닭이 쇠클에 걸려서 기절하기까지 이동시간은 90초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60초 이내를 권장한다.</p> <p>(1)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영되고 있으며 매일 점검되어야 한다.</p> <p>(2) 전살방법은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① 전기수조에 입수 전 누전으로 인한 감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p> <p>② 전류 : 60Hz 사인파 교류전류 최소100mA 이상</p> <p>③ 통전시간 : 최소 4초 이상</p> <p>④ 전기수조에 날개 죽지 앞부분까지 충분히 입수하여야 한다.</p> <p>(3) 전기수조에 입수하기 전에 누전으로 인한 감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조를 설계하여야 한다.</p> <p>(4) 기절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의식을 회복한 개체를 방혈하여서는 안 된다.</p> <p>① 의식회복 판별법 :</p> <p>- 주요 판별법 : 날개퍼덕임, 무호흡 등</p> <p>- 부수적 판별법 : 안검, 각막반사, 벼슬 반응 등</p> <p>(5) 최초 기절 실패 시 인도적 도살 실시하여야 한다.</p>
	<p>(1)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영되고 있으며 매일 점검되어야 한다.</p> <p>(2) 기체농도가 기절농도에 이르기 전에 육계를 챔버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p> <p>(3) 닭을 CO₂ 가스 기절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① 권장기준</p> <p>- 챔버 내 적정공간 확보</p> <p>- CO₂ 농도 80% 일 경우 최소 1분으로 권장한다.</p> <p>(4) 기절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의식을 회복한 개체를 방혈하여서는 안 된다.</p> <p>① 의식회복 판별법 :</p> <p>- 주요 판별법 : 날개 퍼덕임, 무호흡 등</p> <p>- 부수적 판별법 : 안검, 각막반사, 벼슬 반응 등</p>
가스법	
현수	<p>(1) 쇠클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두 손을 이용하여 두 다리를 현수하여야 한다.</p> <p>(2) 현수작업장에서 낮은 조도의 조명을 사용하거나 푸른색의 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p>
방혈	<p>(1) 방혈은 반드시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p> <p>(2) 기절방법에 따른 방혈시작 시간은 다음과 같다.</p> <p>① 전살법으로 기절한 경우 방혈은 10초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p> <p>② 가스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 챔버를 나온 후 60초 이내에 방혈이 개시되어야 한다.</p> <p>(3) 닭이 방혈 시작 후 최소 90초 경과 이후에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p>

나. 운송차량

1) 포유류

구 분	구 비 요 건
기본사항	(1) 동물운송차량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차량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2) 동물의 추락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동물운송차량 및 적재함에는 날카로운 부위나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4) 적재함 면적이 10m ² 를 초과하는 경우(적재중량 3.5톤급 이상)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동물운송자는 동물복지 지정도축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동물운송차량은 동물운송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서 정한 운송소요면적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운송자는 동물운송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별지1호서식의 동물운송일지를 기록하여 3개월 간 차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차량 설비	(1) 동물 운송차량 및 적재함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측면부 가림막은 운송 중 동물이 밖을 볼 수 없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적재함은 동물의 분변이나 기타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복층구조의 경우 상층 적재함도 해당된다. (5) 적재함 바닥재는 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는 적합한 소재 및 구조이어야 한다. (6) 적재함은 운송되는 동물이 서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고개를 움직일 수 있도록 머리 위 자유공간을 제공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차량적재 공간은 온도, 환기를 고려한 구조이어야 한다.

2) 가금류

구 분	구 비 요 건
기본사항	(1) 동물운송차량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차량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2) 동물운송차량 및 적재함에는 날카로운 부위나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3) 동물운송자는 동물복지 지정도축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p>(4) 적재함은 닭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상차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p> <p>(5) 동물의 추락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p> <p>(6) 동물운송자는 동물운송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별지1호서식의 동물운송일지를 기록하여 3개월 간 차량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p>
차량설비	<p>(1) 동물 운송차량 및 적재함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p> <p>(2) 운송차량은 기후 및 온도변화에 따라 닭이 쾌적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p> <p>(3)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천 등을 이용한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p> <p>(4) 적재함 바닥은 동물의 분변이나 기타 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운용하여야 한다.</p> <p>(5) 적재함 구조물 틈에 닭의 날개나 다리 등이 끼이지 않아야 한다.</p> <p>(6) 적재함 넓이는 수송 중 모든 닭이 서로 올라타는 개체 없이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p> <p>(7) 적재함의 높이는 닭이 앉은 자세에서 자유롭게 목을 움직일 수 있는 높이이어야 한다.</p> <p>(8) 차량적재공간은 온도, 환기를 고려한 구조이어야 한다.</p>

3. 그 밖에 동물복지 운송차량 및 도축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축종별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의7]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기준 및 방법(제36조의11 관련)

1.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도형

가. 동물복지축산물에 다음의 도형을 표시한다.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umber :

나. 작도법

1) 도형 표시방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 \times W$ 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오른쪽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4)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동물복지", "(ANIMAL WELFARE)", "ANIMAL WELFARE"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같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C20+K100으로 한다.

6)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7)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8)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2.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

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동물복지축산물, 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또는 동물복지 사육 ○○(○○은 축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3. 동물복지축산물 원재료의 함량에 따른 표시의 허용 기준

가. 법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의 함량에 포함되는 원재료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로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원재료와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재료를 혼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재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1호가목에 따른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및 표시도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일반제품과 구분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하여야 하고, 원재료 출납서류(인증 농장정보 포함),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법 제63조에 따라 축산물의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농장명, 인증번호, 축종, 농장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지 협소 등으로 인하여 전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농장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 일부 농장의 인증농장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하고 그 외 인증농장정보에 대해서는 포장지의 다른 표시면 또는 홈페이지, QR코드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등 포장지 이외의 방법을 통해 인증농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개수, 인증농장정보 확인 방법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5. 동물복지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가공한 축산물가공품의 인증농장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 생략할 수 있으나 제3호라목에 따라 농장정보를 기록·유지하여 인증농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6. 별표 9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인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거나 방목, 방사 등 소비자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이 별표에서 사용하는 제품명, 주 표시면, 원재료명의 정의 또는 의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10의2]

맹견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제40조의2 관련)

1. 맹견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1.8m 이상의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업장의 외벽은 어린아이 등이 손을 집어넣어 맹견과 접촉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하고, 영업장은 콘크리트 등 맹견이 땅을 파고 탈출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3. 영업장 건물 외벽의 모든 방향 및 영업장 전방 100m 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에 눈에 잘 띄게 맹견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 영업장의 명칭 및 연락처를 표시한 문구를 게시하여야 한다.
4. 사육실, 격리실, 분만실(동물생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외부에서 맹견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각각 분리해야 한다.
5. 사육실은 맹견을 1마리씩 분리하여 사육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어린 맹견이 어미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 등 해당 동물의 특성 및 성향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맹견이 탈출할 수 없는 구조로 개별 운동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맹견이 사육실과 운동공간을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7. 맹견 1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8.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7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맹견의 이동 또는 운송 시 안전장치 등 맹견취급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뒷면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변경사항란은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합니다. (앞쪽)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동물	이름	동물등록번호
----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소유자 변경 * 대표소유자명: (공동등록의 경우만 작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유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	성명(법인명)		
	성명(법인명)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됨	동물등록번호		
[]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 는 경우	동물등록번호		
그외	[] 등록동물을 잃어버림 []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음 [] 등록동물이 죽음 []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음 [] 그 밖의 사유		

변경사항 발생일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그 경위(날짜, 장소, 사유 등)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동물등록증	수수료 무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공동등록의 경우: 신청인 외 공동소유자의 동의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동의]

1.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의 정보와 신고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유실동물의 반환 등의 목적으로 등록동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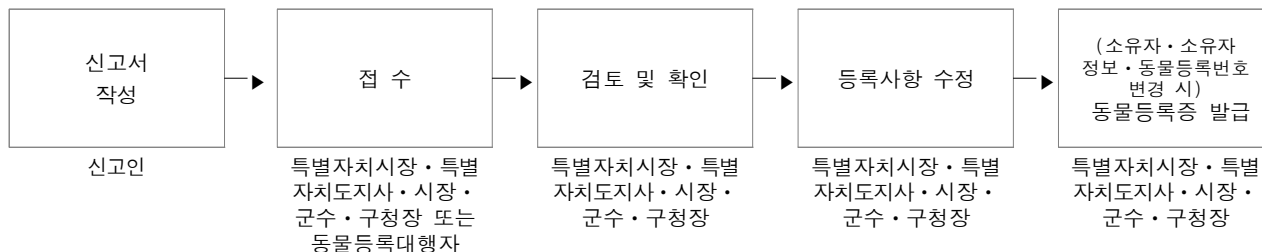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모두 작성합니다.
2.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소유자의 변경된 내용만 작성합니다.
3. 동물의 이름 등 등록동물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의무는 없으나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잃어버린 등록동물의 정보는 동물정보시스템에 공고됩니다.
5.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은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사유로 변경신고 후 1년 동안 등록동물을 다시 찾은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7. 등록동물이 죽은 사유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8. 동물등록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대표소유자는 변경신고 시에 반드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동소유자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 후만 작성, 공동소유자를 삭제하는 경우 변경 전만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맹견사육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20일
------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맹견	동물등록번호	품종
	이름	출생일
	맹견책임보험 가입일	중성화 수술 여부
	사육장소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공동)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맹견의 사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동)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동)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동)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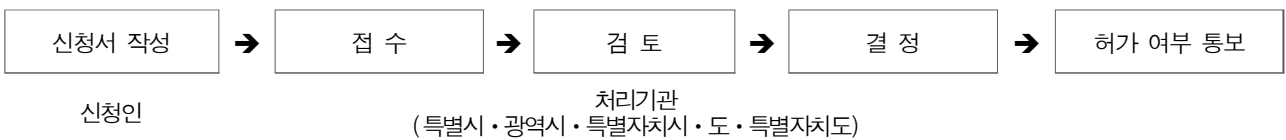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등록증 사본 1부 2. 맹견책임보험증서 1부 3. 해당 맹견의 중성화 수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맹견이 8개월령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1부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동물보호법」 제19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각각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의사의 진단서 또는 「동물보호법」 제19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각각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맹견수입신고서 사본 1부(맹견을 수입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맹견의 품종은 ①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②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③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⑤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중에서 선택합니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여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신청인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맹견이 8개월령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워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8개월령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 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맹견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4. 월령이 6개월 이상의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보호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공동신청인을 포함합니다)에게 교육의 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제 호		
맹견사육허가증		
맹견	동물등록번호	품종
	이름	출생일
	중성화 수술 여부(중성화 수술을 못 한 경우 중성화 수술 완료 증명서류 제출 기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p>「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맹견의 사육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직인</p>		

제 호		
맹견	동물등록번호	품종
	이름	출생일
	맹견책임보험 가입일	중성화 수술 여부
	사육장소의 주소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접수기관	부서명	담당자명(전화번호)
<p>「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신청하였음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접수증 발급일자)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p>		
※ 참고사항: 접수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시·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증

[앞면]

제 호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증
<p>사 진 3cm × 4cm (모자를 벗은 상반신 으로 뒤 그림 없이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p>
성 명 기 관 명

재질 : 폴리염화비닐(PVC)

규격 : 54mm × 85.6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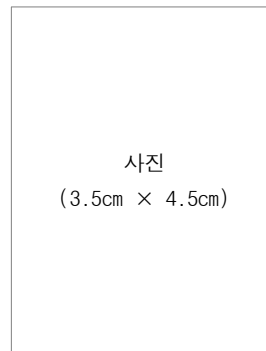
[뒷면]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동물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위촉된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동물보호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질평가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이 증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등급:
- 근거:



「동물보호법」 제31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①법인명(조직명, 농장명)		②조직원(고용인) 수
	③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⑤신청구분 [] 인증 신청, [] 인증 갱신신청		
	인증의 구분	⑥축종	
		⑦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	
	⑧농장소재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번호 :
사육시설 : 동 m ²		사육규모 :	

「동물보호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1부	수수료 제56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동의]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동물보호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홍보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동물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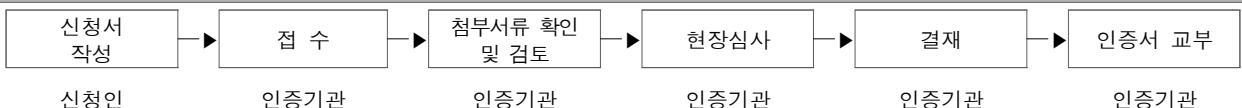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 ⑤신규 시 인증 신청에 표시하고, 인증 유효기간 도래하여 신청한 경우 인증 갱신신청에 표시합니다.
- ⑥축종에는 한우·육우·젖소·돼지·육계·산란계·오리로 구분하여 적고, ⑦동물복지 자유방목 축산농장으로 표시하려면 "여"에 표시합니다.
- ⑧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인증번호 제 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농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인증구분	축종					
	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 / 부					
농장소재지						
사육시설	동	m ²				
사육규모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동물보호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5제1항, 제36조의1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복지축산농장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

직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

연번	인증 연월일	인증번호	신청 구분	축종	농장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유효기간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동물복지축산농장 [] 인증 갱신 재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단체명(농장명)	직원(고용인) 수	
	대표자(개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심사 신청항목
	재심사 신청사유

「동물보호법」 제5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 귀하

첨부자료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제56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	-------------------	----------------

작성방법

-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신청항목은 인증기관에서 부적합 사유로 통보한 사항 중 재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적습니다.

지정번호: 제 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지정서

-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인증업무의 범위:

「동물보호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1항에 따라 동물 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앞쪽)

제 호
인증심사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 안 쓴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명

55mm × 85mm (PET-G카드, 연녹색)

(뒤쪽)

인증심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동물보호법」 제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준에 관한 심사
2. 법 제66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3. 심사 및 조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 및 자료 제출 요구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①대표자 성명	②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③업체명	④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⑤사업장 소재지			

신청내용	⑥취급 동물의 종류 : 소(), 돼지(), 닭()
------	--------------------------------

「동물보호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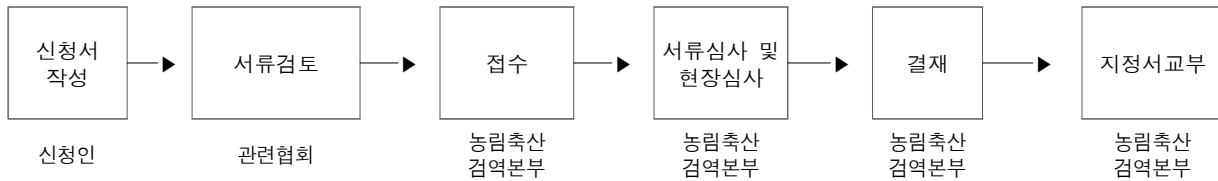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동물복지 도축장 운영현황서 1부
------	-------------------

작성방법

-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⑤란에는 소재지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까지 적어야 합니다.
- ⑥란에서 취급동물은 소, 돼지, 닭 중 해당동물에 ○표를 기입합니다.

처리절차



동물복지 도축 제00-0-0호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서

업체명 (대표자명)	①대표자 성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지정구분	취급동물:	
기타		

위 도축장은 동물보호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10제3항 규정에 따라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인)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변경 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대표자 성명	②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③업체명	④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⑤사업장 소재지			
지정번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동물보호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0제4항에 따라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작성방법

-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⑤란에는 소재지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까지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 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①대표자 성명		②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③업체명		④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⑤주소	거주지 차고지(별도로 차량이 주로 정차되는 곳)		

신청대상 차량	⑥차량번호		⑦취급동물	
	⑧운전자 성명		⑨운전자 생년월일	
	⑩운전자 주소지			
	⑪연락처		(휴대전화:)	

「동물보호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0제6항에 따라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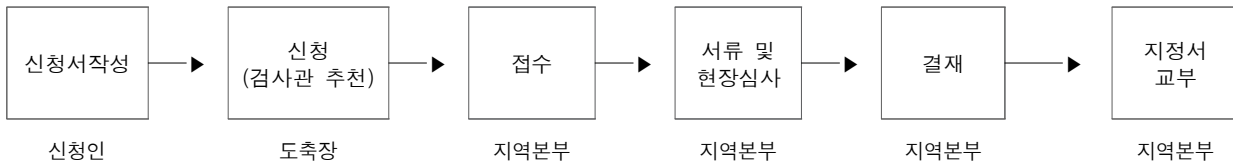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물복지 운송차량 운영현황서 1부 2.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사본)
------	--

작성방법

-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⑤, ⑩란에는 소재지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까지 적어야 합니다.
- ⑦란에서 취급동물은 소, 돼지, 닭 중 하나를 기입합니다.

처리절차



동물복지 운송 제00-0-0호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서

업체명 (대표자명)	①대표자 성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차고지		
지정구분	차량번호 :	
	취급동물 :	
기타		

위 차량은 동물보호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6조의10제7항에 따라 동물복지 운송차량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인)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변경 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대표자 성명	②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③업체명	④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⑤사업장 소재지	
지정번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동물보호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0제8항에 따라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작성방법

-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⑤란에는 소재지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까지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1. 신청내용

신청인	법인, 단체(농장) 명		조직원(고용인) 수	
	대표자(개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인증 구분	축종 : 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		
	신청 구분	[] 최초 신청, [] 갱신 신청	[] 개인, [] 법인, [] 단체	
	농장 소재지			
	사육시설	동	m ²	
	사육규모			

2. 심사결과

항목	평가	
	점수	부적합 항목 수
①일반기준		
②동물의 관리 방법		
③사육시설 및 환경		
④동물의 상태		
⑤실외 방목장 시설(추가사항)		
합계		

3. 심사의견

붙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자료 각 1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허가번호 제 호

(앞쪽)

영업 허가증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영업장	영업장의 명칭(상호)	연락처	
	주소		
대표자 (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영업 종류	※ 동물생산업의 경우 생산동물의 종류, 맹견 사육 여부, 소규모 동물생산업의 여부를 함께 표시 ※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시설(장례식장, 동물 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 설치 여부를 함께 표시 ※ 동물판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일반, 알선·중개, 경매 알선·중개)를 함께 표시		
허가 면적	전체	시설별	
허가 사항 및 조건			
비고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동물보호법」 제6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맹견취급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업종	<input type="checkbox"/> 동물생산업 <input type="checkbox"/> 동물수입업 <input type="checkbox"/> 동물판매업(일반, 알선·중개, 경매 알선·중개) ※ 다수 영업의 허가 신청 시 각각의 영업 허가 신청서 작성 필요

동물생산업 신청자 작성항목

<input type="checkbox"/> 소규모 동물생산업 여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 가목1) 바)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 표시합니다.	맹견 종류별 사육마릿수	맹견의 종류	마릿수		
		<input type="checkbox"/>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암컷	수컷	총합
		<input type="checkbox"/>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input type="checkbox"/>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input type="checkbox"/> 스테퍼드셔 볼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input type="checkbox"/>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의 종류별로 모두 작성 (참고) 맹견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인력 현황(종사자 수)		명			

「동물보호법」 제7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맹견취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p>첨부서류</p>	<p>1. 영업허가증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인력 현황 4. 사업계획서 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생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	<p>수수료 영업허가 건 별 1만원</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p>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p>	

행정정보 공유이용 등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유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허가 내용(영업의 허가 및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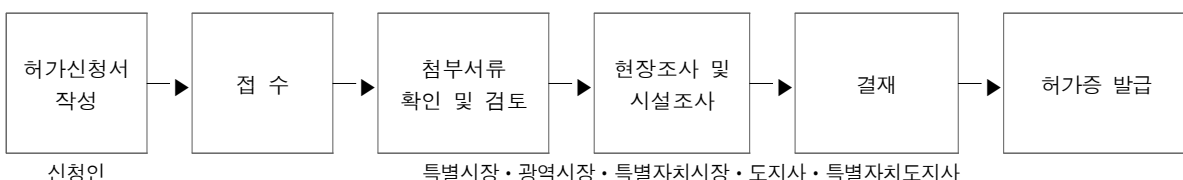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란에 √ 표시를 하고, ()안의 영업의 세부범위에 표시합니다. 다수의 업종에 대해 동시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려면 각각의 영업허가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영업허가 처리는 각각의 영업으로 별도 등록합니다.

처리절차



맹견취급 허가증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영업장	영업장의 명칭(상호)	연락처	
	주소		
대표자 (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맹견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input type="checkbox"/>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input type="checkbox"/>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input type="checkbox"/> 스테퍼드셔 볼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input type="checkbox"/>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영업 종류	※ 동물생산업의 경우 맹견의 종류, 종류별 사육마릿수, 소규모 생산업의 여부를 함께 표시 ※ 동물판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일반, 알선·중개, 경매 알선·중개)를 함께 표시		
허가 면적	전체	시설별	
허가사항 및 조건			
비고			

「동물보호법」 제7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영업의 맹견 취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맹견취급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

1. 영업허가사항						
영업장의 명칭(상호)						
허가번호		허가일자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영업장 현황						
공통 기재사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수	개	종업원 수	명	
생산 · 수입 · 판매	시설면적	사육실/경매실	m ²	접수실/분만실	m ²	
		격리실	m ²	준비실/판매실	m ²	
		건물소유 구분	[]자가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3. 영업허가의 변경사항				4. 그 밖의 행정조치사항		
변경일자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조치일자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4. 행정처분사항						
처분일자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급·성명)	
5. 비고						

맹견취급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동물보호법」 제7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맹견취급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등록번호 제 호

(앞쪽)

영업 등록증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장	영업장의 명칭(상호)	연락처	
	주소		
대표자 (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영업 종류	※ 동물전시업의 경우 전시동물의 종류를 함께 표시 ※ 동물미용업의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일반, 자동차 이용)를 함께 표시 ※ 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을 함께 표시		
등록 면적	전체	시설별	
등록 사항 및 조건			
비고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동물생산·수입·판매업 개체관리카드

※ 햄스터, 기니피그는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음

생산·수입 시 작성사항

구분	개체정보		어미정보(생산업만 기재)	
동물등록번호				
개체관리번호				
출생일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특성(털색 등)				
수입정보(수입) 번식정보(생산)	수입일	수입국	출산일	출산마릿수 (암, 수)
건강정보	기록일	질병명(유전병력 포함), 건강상태, 조치내역 등	기록일	질병명(유전병력 포함), 건강상태, 조치내역 등

경매 시 작성사항

수의사 검진사항		수의사 (면허번호)	(서명 또는 인)
낙찰자(업체명)		경매일	

영업자 정보(판매처의 정보까지 모두 기입되어 있어야 함)

구분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 허가번호	주소·연락처	반입일	반출일
생산·수입				※번식일 (생산업의 경우)	
판매 (경매 포함)					
소유자 등	※소유자의 성명	※동물등록번호			/

* 해당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할 것.

3. 영업실적(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제출일: 년 월 일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 (단위 : 마릿수)

**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구분		생산·수입·판매								장묘
증감		증가현황		보유현황			감소현황			처리
월	동물의 종류	생산	수입·구입	어미	판매 대상	그외	판매	사망	기타 손실(사유)	
1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2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3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4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 (단위 : 마릿수)

**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구분		생산·수입·판매								장묘	
증감		증가현황		보유현황			감소현황			처리	
월	동물의 종류	생산	수입·구입	어미	판매 대상	그외	판매	사망	기타 손실(사유)		
5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6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7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8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 (단위 : 마릿수)

**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구분		생산·수입·판매								장묘
증감		증가현황		보유현황			감소현황			처리
월	동물의 종류	생산	수입·구입	어미	판매 대상	그외	판매	사망	기타 손실(사유)	
9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10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11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12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신 설>

제12조의4(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게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이수 또는 훈련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의 내용은 맹견의 적절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와 사고방지 등에 필요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포함하며, 제1항에 따른 훈련의 내용은 해당 맹견의 특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체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신 설>

2. 영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맹견 관련 교육 또는 훈련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5(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만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

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게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
에서는 맹건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건의 이동을 제한할 것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
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나.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준주택의 건물 내
부의 공용공간

② 맹건의 소유자등은 제1항제1
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
장치를 사용하여 맹건을 이동시
킬 때에는 맹건에게 목줄 및 입
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맹건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

<신 설>

<신 설>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제12조의6(맹견 위해방지 조치 등)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맹견에 의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외벽 등 맹견의 탈출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경고문 등 표시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맹견에 의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시설 등의 설치

제12조의7(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 설>

제12조의8(맹견 소유자의 교육)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기적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초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경우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2. 그 외의 경우: 제1호의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1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3시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2. 영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

문기관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4.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록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

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유지·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기질평가에 따른 교육 이수 또는 훈련 명령 등) 영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4를 준용한다.

<신 설>

제13조의3(기질평가비용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며, 그 밖에 구체적인 기준, 지급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
2. 기질평가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3. 기타 기질평가에 필요한 비용

<신 설>

제13조의4(기질평가 조사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

<신 설>

른다.

제13조의5(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5항 및 영 제14조의5에 따른 위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의 과목, 방법 및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6(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자격검정시험 제도 운영을 위한 자격검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3조의7(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위탁기관은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4호의 7서식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자격증을 교부하기 전에 자격증 교부 대상자가 법 제3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합격자에게 사실 증빙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자료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및 법 제3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자격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8(검정수수료 등의 징수) 영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검정수수료 등 시험의 실시에도 필요한 실비 및 보수 교육 경비는 위탁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9(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경우는 제외한다)

6. ----- 제5호까지

--

제31조의2(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

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농
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하거나
검역본부장이 법 제51조제1항
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
치된 윤리위원회 중에서 공용윤
리위원회를 지정한다.

②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운
영 및 기능 등에 대해서는 법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및 제58조의 규
정을 준용하되, 공용윤리위원회
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과 관
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
부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신 설>

<신 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에서 승인받아 국제기구 또는 내·외국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현장 실험

2. 질병방역 또는 공중보건상 시급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동물실험

제36조의2(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대상 동물의 범위) 법 제5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소, 돼지, 닭, 오리,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6조의3(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인증갱신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 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한다)의 경영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 갱신 절차 및 갱신 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신 설>

제36조의5(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인증심사를 하여야 하고, 별표 9의2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1.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

2.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

② 제1항의 인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의3과 같다.

④ 그 밖에 인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6(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⑤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의5를 준용한다.

<신 설>

제36조의7(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검역본부장은 영 제23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법인이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일

②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심사(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5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갱신 심사 및 재심사

3. 법 제65조에 따른 인증취소

4. 법 제66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5. 그 밖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검역본부장이 요청하는 업무

③ 검역본부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8호의 7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인증심사원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30시간 이상의 교육

2. 정기교육 : 인증심사원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1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4시간 이상의 교육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법령

3.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업무, 인증심사원의 교

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6조의8(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9의4와 같다.

<신 설>

제36조의9(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농장의 표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9의5와 같다.

<신 설>

제36조의10(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절차)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차량”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도축장”이란 검역본부장이 별표 9의6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운송차량(이하 “동물복지 운송차량”이라 한다) 및 도축장(이하 “동물복지 도축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8
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
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허가
증 사본

2.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서식의 동물복지 도축장
운영현황서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심사를 해야
하고, 신청이 별표 9의6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에
게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물
복지 도축장 지정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④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받
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
10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
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심사를 해야 하고, 변경내용이 별표 9의6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동물복지 운송차량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11 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 차량 등록증 사본
2.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동물복지 운송차량 운영현황서

⑦ 검역본부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 이내에 지정심사를 해야 하고, 신청이 별표 9의6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의12서식의 동물복지 운

송차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동물복지 운송차량으로 지정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13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⑨ 검역본부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 이내에 변경심사를 해야 하고, 신청이 별표 9의6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의12서식의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11(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9의7과 같다.

<신 설>

제36조의12(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

<신 설>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7서식과 같다.

제36조의13(유사한 표시의 세부기
준)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과 유사한 표시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1. “동물복지”라는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
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
시

2. “Animal Welfare”라는 문구
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
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의 표시.

② 그 밖에 동물복지축산물과
유사한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6조의14(동물복지축산농장 인
증의 승계신고) ① 법 제68조제
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한 자는 별지 제18호의14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승계신

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승계받은 농장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1부

3.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1부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영업의 허가)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제37조(영업의 허가) 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5. (생략)

<신설>

<신설>

② ~ ⑥ (생략)

<신설>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종사자 등 인력 -----

3. 영업대상, 영업 세부방안, 영업장소,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계획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4.·5. (현행과 같음)

6.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그 밖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때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0조의2(맹견취급허가 등) ① 영 제23조의3에 따른 맹견취급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3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
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③ 시·도지사는 영 제23조의3
에 따른 신청이 별표 10의2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게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맹견
취급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맹견취급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맹견취급허가 관
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
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맹견취급허가
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
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
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맹견취급허가
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맹견취급변경허가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는 별지 제23호의6서식과 같다.
그 밖에 맹견취급 변경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법 제70조제3항제1호 및 제4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2. 법 제70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한 다음 달 말일까지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는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2조(영업의 등록)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제42조(영업의 등록) ① ①법 제73조제1항 -----

2. 종사자 등 인력 -----

--

2. (생략)

3. 사업계획서

4. (생략)

<신설>

<신설>

② ~ ⑥ (생략)

<신설>

제47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 7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등록증) 원본(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동물처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영업대상, 영업 세부방안, 영업장소,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계획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4. (현행과 같음)

5.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7조(휴업 등의 신고) ① -----

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48조(직권말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51조(영업자 교육) ①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종류, 교육 시기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업 신청 전 교육: 영업허가 신청일 또는 등록 신청일 이

----. <단서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직권말소) ①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영업자 교육) ①-----

-----.

1. -----

전 1년 이내 3시간

2. 영업자 정기교육: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매년 3시간

3.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추가교육: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② 법 제82조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 영업자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 중 중복된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③ 제82조에 따른 교육은 다음

----- 3시간(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의 경우 4시간)

2. -----

----- 3시간
(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의 경우 4시간)

3. ----- 추가 교육: -----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맹견의 안전관리, 사고방지에 관한 사항(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영업자에 한한다)

③ 법 제8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
체에서 실시한다.

1.·2. (생략)

제53조(영업장의 폐쇄)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하
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신설>

-----.

1.·2. (현행과 같음)

제53조(영업장의 폐쇄) -----

----- 다음 각 호의
증표 및 서류-----
-----.

1. 영업장 폐쇄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

2. 조치기간, 조치범위 및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